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 매뉴얼



목 차

제1장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제도

1. 개 요	1
2. 법적근거	1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	1
4.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규제의 변천과정	2
4.1 제도추진 초기	2
4.2 관련법규 변천	3
4.3 다중이용업소 대상 연혁	25

제2장 완비증명 발급 프로세스

1. 완비증명 발급 절차	26
2. 완비증명 구비 서류	28
3. 완비증명 발급 계통도	29

제3장 완비증명 발급관련 세부사항

1. 다중이용업	31
2. 안전시설등	53
3. 실내장식물	75
4. 화재위험평가	76
5. 밀폐구조의 영업장	77

6. 영업장의 내부구획	77
7. 다중이용업소 업무 담당부서	79
8.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사진)	80
9.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등 서식	81

제4장 완비증명 관련 지침 등

1. 집단급식소 완비증명발급 관련 업무처리 지침	87
2.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지침	88
3.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PC방 용도변경	91
4. 독서실 수용인원 산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92
5. 비상구 부속실에 완강기 설치장소 안전장치	93
6. 완비증명 사전지도 요청대상 출장지도	93
7. PC방 금연구역 설정관련 소방시설 등 보완방법	94
8. 기존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고시	94
9. 산후조리원 관계법령	95
10. 기존다중이용업소 등 소급적용관련 완비처리 지침	97
11. 현장복수복명 처리개선	99
12. 기존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대상 관리	99
13. 다중이용업소 이중덧문 설치 관련 개선 지침	99
14. 완비증명서 발급 선 처리 후결재 시스템 시행	100
1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 기준 시달	102
16. 건축법 개정관련 고시원 완비증명서 발급방법 알림	104
17.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관한 개선 지침	106
18. PC방 등 전면 금연실시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107

19. 구획된 실의 개념과 출입문 관련 업무 지침	109
20.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110
21. 감성주점 완비증명서 발급처리 지침	110
22. 비상구 설치 위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111

제1장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제도

1. 개 요

-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는 소방시설과는 달리 별도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장에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게 하고,
-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 즉, 다중이용업소인 경우 영업신고, 등록 등을 하기 전에 안전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 후 완비증명을 발급받게 하여, 화재 및 재난발생시 다수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

- 사회 및 생활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노래방·비디오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밀집화 되어가고, 새로운 업종의 출현 등으로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팽창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영업장은 대규모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화재 발생 시 영업주나 종업원의 초기 대처능력 미흡 등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왔다.

-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완비증명제 시행 등 다양한 화재안전대책을 보완하여 왔으나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이와 같은 현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여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을 일원화 및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중이용업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제정하게 되었다.

4. 다중이용업소 관련 소방규제의 변천과정

4.1. 제도추진 초기

- (1) 80년대 후반 일본의 가라오케가 부산지방에 서서히 상륙
- (2) 90년대 초반 노래방·노래연습장 등이 전국에 우후죽순 발생
- (3) 1991. 3.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 경찰청
- (4)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의거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휴·폐업 때도 같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연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판매업과 대여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화대여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6.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2. 관련법규의 변천

- 1995. 11. 22. 부산 중구 남포동 자이안트노래방 및 1995. 12. 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진실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와 이를 계기로 드러난 다중이용업소의 문제점은 법제도 추진의 배경이 되었고 법제도상의 보완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 연이어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법규를 개선하거나 더욱 강화하고 이를 보완하여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유관 단체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화재예방에 힘써 왔다.
- ※ 자이안트노래방 화재 : 1995. 11. 22 부산 중구 남포동(4층)
(담배불, 사망 8명, 부상 2명, 재산 8,500만원)
- ※ 진실노래방 화재 : 1995. 12. 4 서울 서초구 서초3동(지하1층)
(유류, 사망 8명, 부상 3명, 재산 3,100만원)

4.2.1. 노래연습장등 시설점검 강화지시 - 경찰청장

[경찰청장→지방경찰청에 지시“방지63230-1707(1995.12.6.)”]

① 동 기

- 1995. 11. 22. 자이안트 노래방 화재
- 1995. 12. 4. 진실 노래방 화재

② 방 법 : 노래연습장 신규 신고 시 -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4.2.2.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 첨부제 시행

① 시행 : 1995. 12. 13. (내무부예방12310-125호)

② 내용 :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에 지시된 사항 협조

4.2.3. 노래방 시설기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① 국무총리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결과 : 내무부예방13810-537(95.12.20)호
- ② 내무부(예방과) 주관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전국소방인연합회, 소방설비기술사 등 참석 하에 노래방 시설기준 제정 협의

4.2.4. 노래연습장등 다중이용시설 소방대책 시달

- ① 시행 : 1996. 1.11. (내무부예방13810-78호)
- ② 내용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법률, 식품위생법 개정 등 시설고시 제정추진

4.2.5. 노래연습장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

- ① 시행 : 1996. 3.30 [내무부고시 제1996-71호]
- ② 적용대상

업종별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기 타 룸싸롱,록카페
관련법령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허가)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록)	

- ③ 적용시설

피 난 설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도장치 : 유도등, 피난유도선, 유도표지등, 비상조명등 ② 경보장치 : 비상벨, 사이렌, 비상방송시설 ※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가능하여야 함
소 화 설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복도, 통로등에는 능력단위 이상의 수동식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② 주거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영상음향차단 장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 ② 자동(수동) 차단장치는 관리자가 상주.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난 방 시 설	① 온수, 스팀, 온풍 등을 이용한 간접가열방식으로 설치 ② 전기·가스·석유 등을 이용한 직접가열방식으로 설치한 경우 바닥면과 밀착 고정하거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등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은 사용가능(영업 내의 구획된 실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누전 차단기	부하용량에 적절한 누전차단기 설치
내장재불연화	영업장내 칸막이, 벽, 천장, 바닥의 내장재
비 상 구	복도, 통로 등 대피에 장애 없는 구조이며, 적치물 등 방치 금지

- ④ 종사자 교육 : 매년 2회 이상(상·하반기) - 종사자 대상
- ⑤ 기존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 기존노래연습장은 각 실별로 능력단위 1단위이상 수동식소화기 1개씩을 비치하거나 자동확산소화 용구를 1996. 9. 30. 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4.2.6.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996. 6. 7)

→ 1995.12.13. 부터 시행한 소방시설 완비증명첨부 법적근거 마련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4호)

4.2.7.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개정 (1996. 12. 20)

- ① 주요내용 : 유흥주점, 단란주점 및 66㎡이상인 지하층의 일반음식점은
 - 영업허가 신청 시 소방시설완비증명을 첨부해야 함
 - 소방법령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 ※ 지하층 일반음식점의 면적기준(66㎡이상) 마련
- ② 경과규정 : 기존시설은 '98. 6. 30까지 개정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함

1996. 9. 29. 서대문구 창전동 52-111 롤링스톤 록카페 화재로 사망 11명, 부상 3명, 재산피해 350만원의 피해 발생

4.2.8. 비상탈출구 세부시설기준 시달 (1997. 1. 28)

☞ 본부 예방13810-169(1997. 1. 28)호

- ① 유효너비 0.75m 유효높이 1.5m이상일 것
- ②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외부에 비상탈출구 표시를 할 것
- ③ 출입구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 ④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 하단까지의 높이가 1.2m이상인 경우에는 발판의 너비가 20cm이상인 사다리를 벽체에 고정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 ⑤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 및 직통계단까지에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cm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하여 불연재료로 할 것
- ⑥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⑦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4.2.9.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발급제도 법제화 (1997. 3. 7 신설)

☞ 소방법 제8조의 2

- ① 시 행 : 1997. 9. 7. (6개월 경과규정)
- ② 내 용 : 다중이용업의 영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소방·방화시설을 갖추고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2.10. 소방법시행령 “다중이용업의 범위” 신설 [1997. 9. 27]

☞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

- ① 시행 : 1997. 9. 27.
- ② 내용 : 일반음식점 지하층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이상인 것,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4.2.11. 노래연습장 소방시설완비증명제도 신설 [1997. 12. 2]

[소방법시행규칙 개정('97.12.2)관련 부칙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 ('97.12. 2 신설)

- 시 행 : 1997. 12. 2.
- 내 용 : 완비 확인 및 증명발급 절차 규정

②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 시 행 : 1997. 12. 2.
- 내 용 :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첨부

※ 소방법시행규칙 개정('97.12.2)관련 노래연습장영업의 완비 증명제도 최초 법제화

③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4호)

- 시 행 : 1997. 12. 2.
- 내 용 : 구비서류 중 “소방시설완비증명”을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으로 용어개정

④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9호)

- 시 행 : 1997. 12. 2.
- 내 용 : 구비서류 중 “소방시설완비증명”을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으로 용어 개정

4.2.12.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소방·방화시설의 종류” 개정(1999. 8. 6)

- 소방법 시행령 -

제4조의3(소방·방화시설의 종류)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 SP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비상탈출구)

3.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4.2.13.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의2 내지 제143조의4

(1998. 5. 12 신설)

① 시 행 : 1998. 8. 12. (3개월 경과규정)

② 내 용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3조의2 (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외에 영 제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 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무부고시 제96-71호 (96.3.30)고시에서 정한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삭제함

나.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은 그중 하나이상을 제103조의2 내지 제1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의 복도, 통로에서 유도등 또는 출입구(비상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비상벨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는 제96조의2 및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완강기를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 및 2층, 11층 이상은 제외
3.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의3(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의 영업장에는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의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 나. 영업장의 주 출입구외의 벽 등이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리등 불연재료로 구획되어 유사시 영업장 외부로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우
2.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것.
(단서신설 '99.12.31 :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또는 지하층으로서 비상구·출입구가 건물의 구조상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출입구의 문은 불연(不燃)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을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통할 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 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 할 것.

제143조의4(기타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 가. 영상음향차단장치는 화재시 자동 또는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직근에 "영상음향차단장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적절한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영업장안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햇빛이나 전등불에 의하여 촉광하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및 기능의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유사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1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925호(99.2.8) 제정

☞ 1999. 5. 9. 경찰업무에서 자치구업무로 이관 (공보과)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폐지

4.2.15. 건축 관계법에 비상탈출구 법적근거 마련 (1999. 5. 7)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1999. 5. 9.)

비상구는 1997. 1. 28. 이전 대상은 소방법시행령 제2조의4기준에
준하여 인정하였고 1997. 9. 2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가 법제화된 이후부터 건축법에 의한 비상탈출구시설 세부기준 준용 시행

4.2.16.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완비증명 확대 (지침)

① 근 거 : 본부 예방13810-1292(2000.12. 5)호

본부 예방13810-1436(2000.12.30)호

행자부 예방13810-1488(2000.12.26)호

② 내 용 : 관계법령 개정 공포되기까지 한시적 운영(범위확대)

- 소방법시행령 -

제4조의2(다중이용업의 범위)

- 개정 : 2001. 3. 20.

- 시행 : 2001. 5. 20 (2월 경과규정)

- 내용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영업, 게임제공업)

- 일반음식점으로 지상 2층 100㎡이상

- 휴게음식점으로 지하층 66㎡이상, 지상 2층 100㎡이상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게임제공업
(pc방, 오락실 등)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을 첨부토록 함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일명 pc방)은 2002. 1. 1. 부터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변경됨

4.2.17.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개정 (2001. 3. 20)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이상 (지상층 포함) → 시행 2001. 5. 21.

4.2.18.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2001. 3.20.]

☞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6항 신설 (2001. 3.20 신설)

- ① 시 행 : 2002. 1. 1. (경과규정)
- ② 내 용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m²이상인 것으로 한다.

4.2.19. 다중이용업의 범위 추가 (2002. 3. 30)

☞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다중이용업의 범위)

- ① 시 행 : 2002. 3. 30.
- ② 내 용
 - 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에 한한다) ⇒ 비디오감상실업 및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으로 한함)
 - 이미 등록된 복합유통·제공업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소방·방화시설 등을 갖출 것

4.2.20. 다중이용업소 방염처리면적 제한규정 도입 [2002. 3. 30]

☞ 소방법 시행령 개정

- ① 시 행 : 2002. 4. 12.
- ② 내 용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판·목재에 한하여 천장과 벽을 합친 면적의 10분의3(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10분의5) 범위 내에서 방염처리 가능

4.2.21.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등 (개정 2002. 3. 30.)

☞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소방·방화시설의 종류)

- ① 시 행 : 2002. 3. 30 (기존 영업장은 2003. 3. 29까지 설치)
- ② 내 용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및 숙박시설(오피스텔 제외)
⇒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제30조 5항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
 - 방화문·비상구(비상탈출구) ⇒ 방화문·비상구

4.2.22. 다중이용업소 시설기준 일부 개정 [2002. 4. 12.]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의2 내지 제143조의3

- ① 시 행 : 2002. 4. 12.
- ② 내 용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3조의2(소방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외에 영 제4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 가.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각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은 그 중 하나 이상을 제103조의2, 제104조 내지 제107조 및 제10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안의 복도, 통로에서 유도등 또는 출입구(비상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제10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 라. 비상벨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비상방송설비중 하나 이상을 제96조의2·제96조의3 및 제97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2.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지상과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와 면하고 있는 개구부 또는 비상구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8에 의한 소방대상물별로 그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3조의3(방화시설) 다중이용업소에는 영 제4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업장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지상으로 통하는 계단·복도 또는 통로에 연결되는 비상구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주 출입구 외에 당해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할 것.
 - 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다.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장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안의 비상구 및 주출입구의 문은 방화문(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것.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와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서규정 신설)
3.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층을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통할수 있는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하고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여야 하며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조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4.2.23. 신종 다중이용업소 신설 (2002.10.16.)

☞ 소방법시행규칙 제2조의2(다중이용업의 범위)

① 시 행 : 2003. 1. 17.

② 대 상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PC방), 콜라텍

4.2.24. 건축관계법 지하층의 구조·설비기준 신설 [2003. 1. 6.]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① 시 행 : 2003. 1. 6.

② 내 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25조(지하층의 구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①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의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행 2004. 1. 6.>

4.2.25. 건축법시행령(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개정 [2003. 2.24]

- ① 시 행 : 2003. 2. 24.
- ② 내 용 :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2호 및 제5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사용하여 하는 대상에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의 다중이용업이 추가 포함됨

4.2.26. 학원, 목욕장업, 영화상영관 다중이용업소 추가 (2004. 5. 30)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① 시 행 : 2004. 5. 30.
- ② 내 용
 - 학원, 목욕장업, 영화상영관을 추가하여 다중이용업 범위확대
 - 게임제공업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 제외

4.2.27. 다중이용업소 공사전 사전신고 의무화 (2004. 5. 30)

- ① 시 행 : 2004. 5. 30.
- ② 내 용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제3항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4.2.28.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정의 (2004. 5. 30)

- ① 시 행 : 2004. 5. 30.
- ② 내 용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cm이상, 세로 150cm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

4.2.29.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시행

- ① 시 행 : 2004. 6. 4.
- ② 내 용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시설기준
 - ※ 비상경보설비 등 각각의 화재안전기준 제정(2004. 6. 4)

4.2.30. 발코니·부속실의 크기 및 구조 관련 지침 [2004. 7.16]

- ① 시 행 : 2004. 7. 16.
- ② 내 용 : 소방정책과-546호 “소방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운용지침”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 너비 50cm이상, 길이 1m이상
 - 재질은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구조
 - 발코니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높이 1m이상 난간설치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 크기 : 가로 1m x 세로1m 이상
 - 구조 : 준불연재료 이상
 - 부속실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구획

4.2.31. 발코니·부속실의 크기 및 구조 (2007. 3. 23 제정)

- ① 시 행 : 2007. 3. 25.
- ② 내 용
 - 발코니의 구조 및 크기
 - 가로 75cm이상, 세로 150cm이상
 - 발코니에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높이 100cm이상 난간설치
 - 부속실의 구조 및 크기
 - 크기 : 가로 75cm이상 x 세로 150cm이상
 - 구조 : 준불연재료 이상, 부속실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

4.2.32. 기존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소급설치 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

- ① 시 행 : 2007. 3. 2.
- ② 내 용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방법
 - 비상경보설비 설치 방법, 방화문 설치 방법
 -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처리 방법 등

4.2.33.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 (2007. 3. 25)

- ① 시 행 : 2007. 3. 25.
- ② 제정이유
 - 화재위험성이 높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급속한 증대
 - 헌법상 부여된 국가의 화재로 인한 생명보호의 실현
 -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및 민사상 피해배상 문제 발생 등
- ③ 주요 내용

- 국가 등의 책무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 소방방재청은 5년마다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 신규 다중이용업소 지정 근거 마련
-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접수 행정기관은 다중이용업소의 성명, 주소 등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 규정 마련
-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의무화
 - 「국민연금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의무자인 종업원
 - 영업개시 전 신규교육, 2년 마다 1회 소방안전교육(4시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마련
- 피난안내도(야광)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화
-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 법령위반 다중이용업소의 공개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부착 : 소방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 이행강제금(1천만원 이하) 부과제도 도입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제도 도입
-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 제도 도입 등
- ※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기준이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다중이용업소 관련내용이 이관됨

4.2.34. 다중이용업소 대상 변경 (2007. 3. 2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① 시 행 : 2007. 3. 25.

② 범 위

-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100㎡이상(지하 66㎡ 이상)
 - 단,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 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
 - ※ 복층구조 개념 최초 도입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학원, 독서실 수용인원 300인 이상
 - 학원 수용인원 100~300미만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 300명 이상(운영권자를 달리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 수용인원 100인 이상, 찜질방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업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영업
 -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4.2.35.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기준 제정 (2007. 3. 2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① 시 행 : 2007. 3. 25.

② 내 용

- 용어의 정의
- 소방시설, 비상구,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기준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영업장 복도·통로 설치기준
- 영업장 창문 설치 기준, 안전시설등 설치의 특례기준

4.2.36.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법 제9조제1항 개정 2009. 1. 7]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의 초기 대응을 쉽게 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함.

4.2.37.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 개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09. 5. 15]

☞ 숙박업 형태로 운영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피난 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고시원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을 강화(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하여 화재 등 재해발생시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4.2.38. 시행규칙 부칙 개정 (2009. 7. 3)

- ☞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피난안내도/피난안내 영상물 비치)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2.3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09. 7. 8)

- ☞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제17조의2(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4.2.4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0.8.11)

- ☞ 다중이용업소 범위 확대(19종 → 22종으로 확대)
 - 화재 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3개 업종 추가
 - ※ 「권총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 지하층 바닥면적이 150㎡ 이상 → 실내권총사격장,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
 -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 적용
 - 기존업소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설치
- ☞ 방화시설(방화문과 비상구)

-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 적용
- 기존업소(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의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

☞ 실내장식물

- 기존업소(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는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되, 실내장식물 변경 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4.2.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1.8.4)

- ☞ 제8조1항 및 제13조제1항“방화관리자”를 각각“소방안전관리자”로 한다.
- ☞ 제14조 제목“(다중이용업소의 방화관리)”를“(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방화관리업무”를“소방안전관리업무”로 한다.

4.2.4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2. 2.22, 시행 2013. 2.23)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별도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제4조제2항 신설).
-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제13조의2제1항 신설).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을 신고할 경우와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3조의3제1항 신설).
- ☞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2항 신설).

4.2.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2.12.27, 시행 2013.2.23.]

- ☞ 비상벨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선택 설치 가능, 영상음향장치 설치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의무 설치 규정,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에 내부 피난통로 설치 규정(제9조·별표1 신설)
- ☞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 금액을 사망 및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명당 각각 1억원 및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등으로 정함.(제9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22조의2 신설)
-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6)

4.2.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3.1.20, 시행 2013.11.20.]

-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 ☞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골프연습장의 범위 명확화(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이 해당)

4.2.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3.8.6, 시행 2014.8.7]

- ☞ 제26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2.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4.1.7, 시행 2015.1.8.]

- ☞ '소방시설 등의 용어를 '안전시설등'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함(제2조제1항제2호)
- ☞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제1항)
- ☞ 법령의 기준을 위반하여 설치한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그 부분을 교체 또는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신설)
-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의 내부구획 재료, 적용대상,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구획을 설치한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기관장이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3제6항 신설)

4.2.4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5.1.20, 시행 2015.1.20.]

- ☞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에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무 등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함(제8조 및 제25조)
 -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 시행
- ☞ 화재위험평가자 대행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4.2.4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16.1.27, 시행 2016.7.28.]

- ☞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권 제도를 도입함 (제9조제2항)
-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유도를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4.3. 다중이용업소 대상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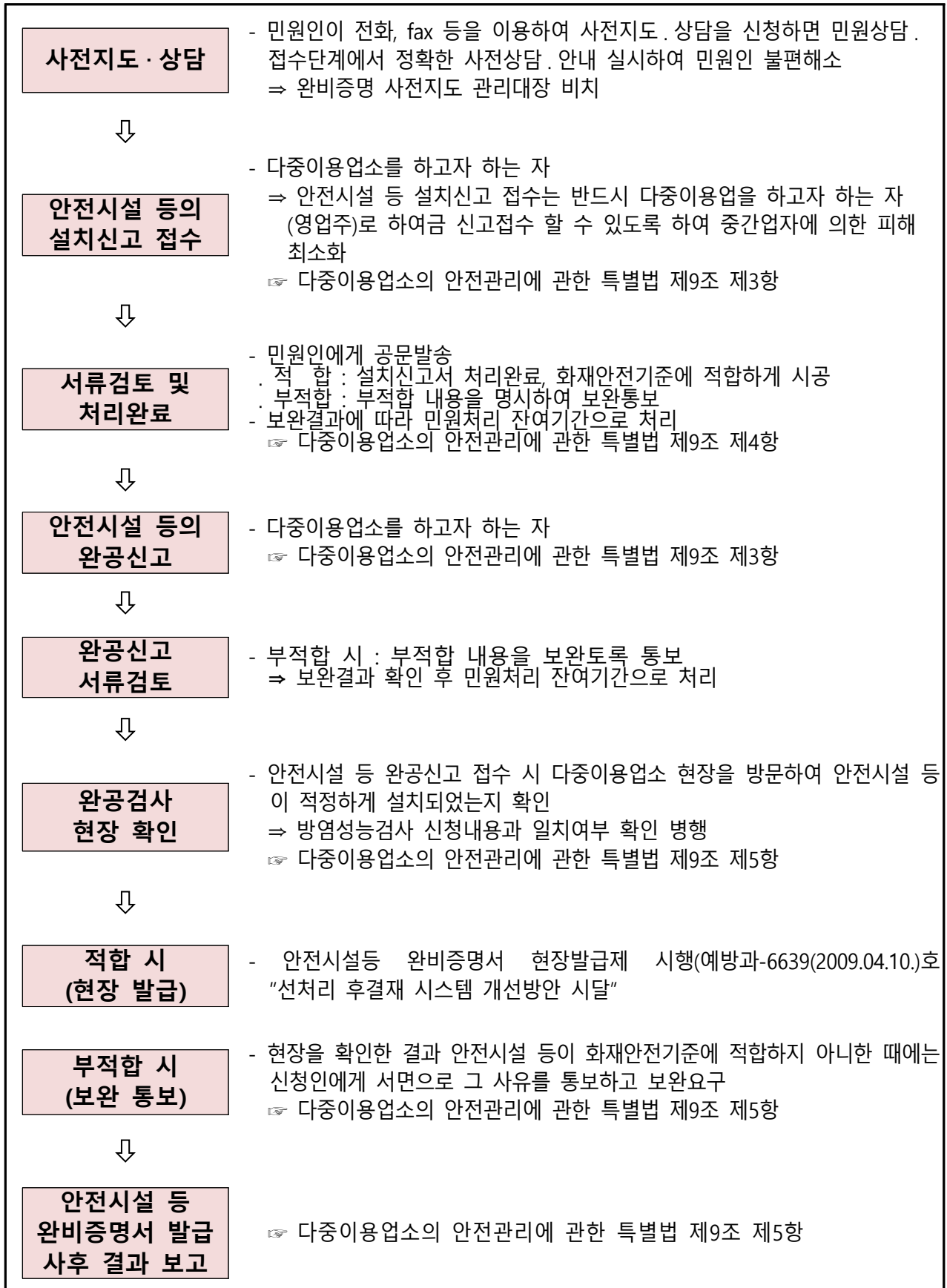
시 기	내 용
1995. 12. 13.	노래연습장 영업신고 시 -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1996. 03. 30.	내무부 고시 제정 -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추가
1996. 10. 04.	지하 일반음식점 추가(롤링스톤즈 화재 이후)
1997. 12. 02.	소방시설완비증명을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으로 변경
2001. 03. 30.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지하66㎡이상, 지상100㎡이상), 게임제공업 추가
2003. 01. 17.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수면방, 콜라텍 추가(신종 다중이용업소)
2004. 05. 29.	학원(독서실), 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 이상), 영화상영관(수용인원 100인 이상) 추가
2007. 03. 25.	학원 수용인원 300인 이상으로 변경
2010. 08. 11.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추가
2013. 11. 20.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제2장 완비증명 발급 프로세스

1. 완비증명 발급 절차

- (1) **사전지도·상담** : 민원인이 전화나 fax 등을 이용하여 완비증명 관련 사전지도, 상담을 신청하면 민원상담, 접수단계에서 정확한 사전 상담, 안내 실시하여 민원 불편해소
⇒ 완비증명 사전지도관리대장 비치 및 작성
- (2)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마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 **현장 확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안전시설등 및 방염처리 적합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 한다.
- (5)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현장발급제 시행(2009.4.10.)
 - ☞ 완공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사전 발급 하여 현장 확인
 - ⇒ 세부절차는 예방과-6639(2009.04.10.)호"선처리 후결재 시스템 개선 방안 시달" 참조
 - ※ 민원 신청을 대리(대부분 공사업자) 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점 확인
- (7)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신규, 재교부) 관리 철저(설치신고 포함)

(8) 업무 흐름도



2. 완비증명 구비 서류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 설치신고서 1부 및 다음의 붙임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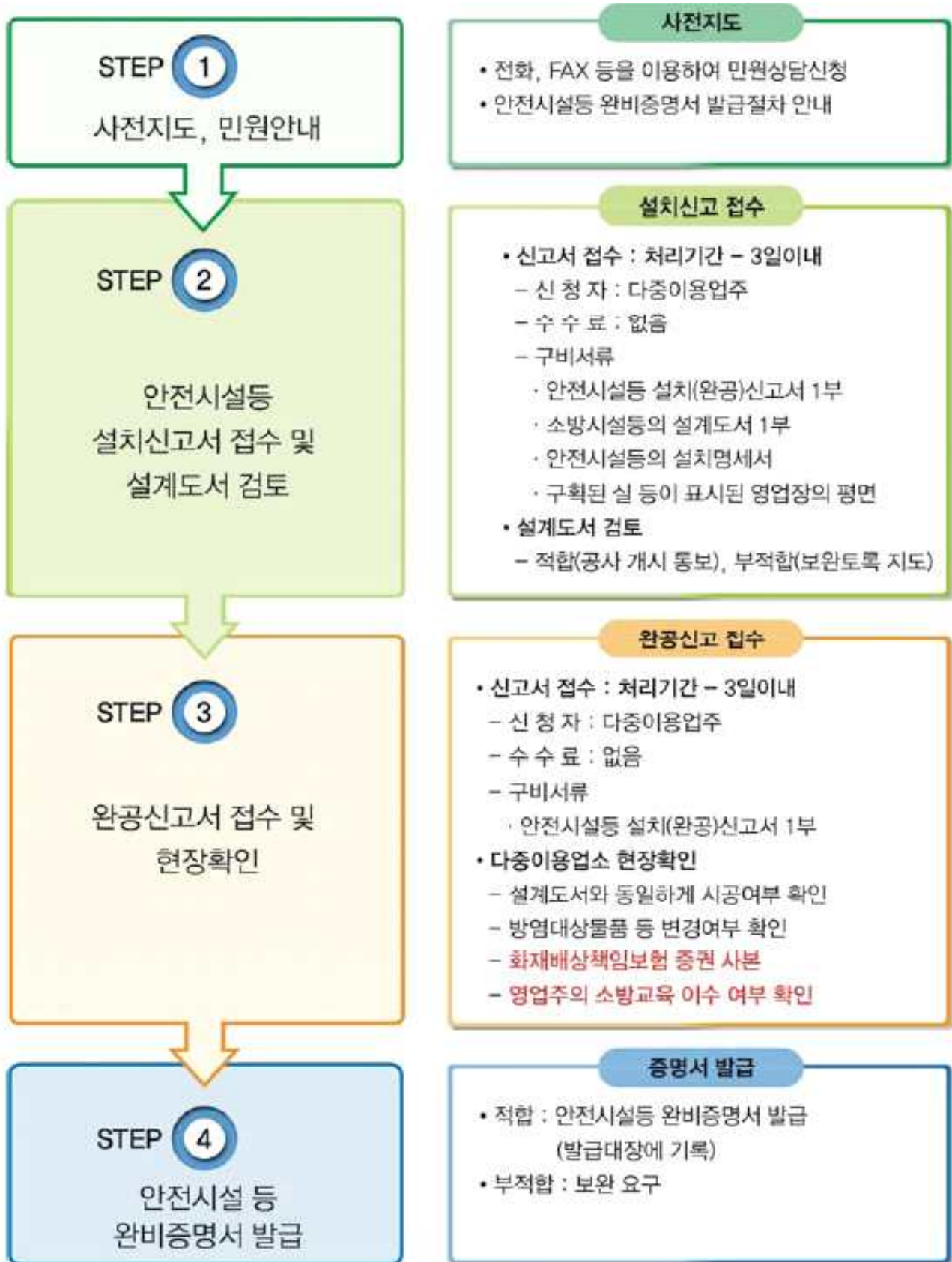
- ①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 설계도서 1부.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 ②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 ③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부.
(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2) **안전시설등 완공신고** : 완공신고서 1부 및 다음의 붙임 서류

- ①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 설계도서 1부.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
- ②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 ③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1부.
(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 ④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한다)

※ 완공신고 붙임 서류 ①②③은 설치신고 시와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완비증명 발급절차 계통도 (요약)



1.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접수

- ①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민원실 접수(민원인)
- ② 서류검토(담당자)
- ③ 사업소(전자민원) : 설치신고서 접수(담당자)
 - 119행정정보시스템 설치신고 등록
- ④ 전자결재시스템 : 설치신고서 접수 결재처리(담당자)
- ⑤ 사업소(전자민원) : 결과처리(담당자)
- ⑥ 전자결재시스템 :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회신(담당자⇒ 민원인)

2.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 접수

- ① 완공신청서 민원실 접수(민원인)
 - 설치신고시 가접수된 완공신청서 민원실 접수(전화 등 요청시 ⇒ 담당자)
- ② 사업소(전자민원) : 완공신고서 접수 처리(담당자)
- ③ 현장방문 계획 및 확인
 - 출장 전 완비증명서 작성, 완비증명서 발급대장에 번호 등재(담당자)
 - 붙임 서류 : 완비증명서, 평면도, 소방안전점검표, 안내문 등
- ④ 현장 확인 결과 : 적 정 → 완비증명서 현장 발급
부적정 → 완비증명서 반납(대장등재)
- ⑤ 사업소(전자민원) : 완공검사신청서 결과 처리
- ⑥ 전자결재시스템 : 완공검사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내부결재)
[점검결과표, 현장사진(출입구,비상구,내부전경,방염성능확인표시,라벨)등]
- ⑦ 사업소(전자민원)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등재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교부 전파

- 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공문 작성하여 각 부서에 알림
- ② 시스템 등록하고 다중이용업소 생성(세부사항 등록)

제3장 완비증명 발급관련 세부사항

1.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1.1. 다중이용업의 범위

업종	시설조건	비고 (관련법)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지하층은 66㎡)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营业을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16호 가목, 나목 및 라목

업 종	시 설 조 건	비 고 (관련법)
학원 및 독서실	<p>1.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것 (학원: 570㎡ 이상, 독서실: 900㎡ 이상)</p> <p>2.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것</p> <p>※ 다만, 학원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을 포함)이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p> <p>(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p> <p>(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p> <p>(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p>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욕장업	<p>일반목욕장: 수용인원 100인(300㎡) 이상</p> <p>※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p> <p>찜질방: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p>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p>게임제공업</p> <p>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 <p>복합유통게임제공업</p>	<p>면적 구분 없이 적용</p> <p>※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p> <p>⇒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해당</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
노래연습장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산후조리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 (관계법령 개정으로 다중법개정시 반영예정)
고시원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권총사격장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골프연습장업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의료법 제82조 제4항
<p>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p> <p>수면방업</p> <p>콜라텍업</p>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1.2.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1.2.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식품접객업)가, 나, 바목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2013.12.30. 시행)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인·허가 담당부서 : 구청 보건위생과

1.2.2. 연 혁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보건복지부령 제41호, 1996. 12. 20)

① 지하 66㎡이상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청 시 완비증명 첨부토록 함

(2)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 “다중이용업의 범위”**(1997. 9. 27 신설)

① 지하 일반음식점 바닥면적 합계 66㎡이상

(3)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2001.3.20. → 2001.5.20시행)

① 지상 2층 100㎡이상 일반음식점 추가

② 지하 66㎡, 지상 2층 100㎡이상 휴게음식점 추가

-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2004. 5. 29)
 - ① 지하 66㎡, 지상 100㎡이상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07. 3. 25)
 - ① 지하 66㎡, 지상 100㎡이상 제과점영업 추가
 - ②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개념 2007. 3. 25 최초 도입
-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190호, 2015. 8. 18.)
 - ① 영업장에서 춤을 추는 행위 원칙적 금지

◆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관련 별표 17 제6호타목7)신설: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금지.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2016. 2. 19.>

1.2.3. 다중이용업소 범위

- (1)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지상 100㎡이상(지하 66㎡이상)인 경우
- (2) 지상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고 1~2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 ① **2007. 3. 25. 이후의 일반음식점**이 1층과 2층이 내부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1~2층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복층구조로 인정하여 1~2층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 2007. 3.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복층구조의 개념이 법으로 처음 도입
 - 2007. 3. 25. 전의 일반음식점의 주출입구가 지면에 직접면한 경우로서 내부직통계단으로 1~2층이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1층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을 다중이용업소로 관리할 법적의무가 없음.

② **2007. 3. 25. 전의 일반음식점**으로 1층과 2층이 내부직통계단으로 연결되고 1~2층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상인 경우(2층이 100㎡이고 1층이 100㎡인 경우)로서 1층과 2층사이 방화문으로 구획된 장소.

- 2007. 3. 25. 전의 일반음식점은 1~2층간 방화구획 여부와 관계없이 2층 영업장면적이 100㎡이므로 2층 영업장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1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1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층이 지면에 직접 면해 있을 경우 화재로 인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적기 때문)

(3)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고 지하1층이 66㎡ 이상이거나 지상1층이 100㎡이상인 경우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 2007. 3. 25부터 적용**

① **2007. 3. 25. 이후**의 일반음식점이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고 지하1층이 66㎡이상이고 지상1층이 100㎡이상인 경우 지하, 지상1층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 2007. 3. 25. 이후의 일반음식점이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고 지하1층 또는 지상1층 하나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 지상1층 모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② **2007. 3. 25. 이후**의 일반음식점이 지하1층과 지상1층이 내부계단으로 직접 연결되고 지하1층(66㎡미만)과 지상1층(100㎡미만)이 각 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층의 바닥면적 합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③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

(해설1)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 ⇒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을 열면 곧바로 지면인 경우를 의미함

(해설2) 건물내부의 복도 등을 거쳐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해석하지 않음. 즉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 곧바로 지면인 것을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것으로 봄

※ 다중이용업소 면적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며, 이는 건축물관리대장 면적으로, 공용부분이 있을 경우는 실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로 함

※ 만화가게 혹은 도서대여점 등의 형식으로 허가를 받고, 그 영업장의 일부를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을시 적용례

-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은 허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4) 집단급식시설은 다중이용업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635(2005.10.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추가)』에 의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① 집단급식시설은 다중이용업소와 동일하게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중 설계도서는 반드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됨

※ 다중이용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1호의 정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으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대상을 말함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원칙적 금지,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어, 소방제도과-916(2016.02.16.)호 『감성주점 완비증명서 발급처리 지침 알림』에 따라 처리

① 춤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 등 완비증명서 신청 시

⇒ 유흥·단란주점 기준으로 발급

② 완비증명서 업종 란에 "일반음식점(춤 허용업소) 또는 휴게음식점 (춤 허용업소)"으로 기재

③ 시·군·구 조례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

⇒ 허가관청 통보 및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치구 별로 확인하여 처리할 것

1.3.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1.3.1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 라목

(1)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인·허가 담당부서 : 구청 보건위생과

1.3.2. 연 혁

1.3.2.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보건복지부령 제41호, 1996. 12. 20)

- (1) 유흥주점, 단란주점 완비증명 첨부토록 함
- (2)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 “다중이용업의 범위”(1997. 9. 27 신설)
 - ① 유흥주점, 단란주점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2007. 3. 25 이관) : 유흥주점, 단란주점

1.3.3. 다중이용업소 범위 :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해당됨.

1.4. 영화상영관 · 비디오물감상실업 · 비디오물소극장업 · 복합영상물제공업

1.4.1. 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16호 가목, 나목 및 라목

- (1) 영화상영관 :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 ※ 비상설상영장 :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2)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 (3)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 (4) 복합영상물제공업 :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인·허가 담당부서 : 구청 문화체육과

1.4.2. 연 혁

- (1)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 고시(내무부고시 제1996-71호, 96. 3. 30)
- (2)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항 4호(1996. 6. 7)
등록 신청 시 붙임서류 : 영업소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 1부(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 (3)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 "다중이용업의 범위"(1997. 9. 27)
 - ☞ 비디오물감상실업
-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2004. 5. 30)
 -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추가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2007. 3. 25 이관)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개정 2013.01.20, 시행 2013.11.20.)
 - ☞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복합영상물제공업' 추가

1.4.3. 다중이용업소 범위 :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해당됨

1.5. 학원 및 독서실

1.5.1.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1) **학원** :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 제1항 4호 :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제2항 :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 인·허가 담당부서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1.5.2. 연 혁

1.5.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04. 5. 30) 제3호

- (1)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1.5.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07. 3. 25)

- (1)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300인 이상
- (2) 학원으로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3. 다중이용업소 범위

- (1)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300인 이상(학원 영업장 면적 570m²이상)
- (2)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다음 어느 하나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 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③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1.5.4. 학원 수용인원 산정시 강의실의 범위

학원 내에 있는 강의실, 원장실, 교무실(사무실, 상담실) 및 휴게실을 포함하여 수용인원 산정

1.5.5. 학원 수용인원 산정방법

- (1) 강의실 등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1.9 m²로 나누어 얻은 합한 수를 수용인원으로 산정

- (2)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음
- (3)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
- (4) 기존에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학원이 입주하는 것으로 인하여 방화구획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의 학원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5) 기존의 학원과 신규학원 사이에 방화구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개 이상 학원의 수용인원의 합이 300인 이상일 때는 신규학원에만 다중이용업소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1.5.6. 독서실 수용인원 산정방법

독서실로서 수용인원 300인 이상(독서실 영업장 면적 900m²이상)
 - 강의실 바닥면적 합계를 3m²로 나누어 수용인원 산정

1.6. 목욕장업

1.6.1. 관계법령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 (1) 목욕장업 :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①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②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 인.허가 담당부서 : 구청 보건위생과

1.6.2. 연 혁

- (1)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2(2003. 1. 17)
 - ① 찜질방(신종다중이용업소)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2004. 5. 30)
 - ① 찜질방업 :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을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07. 3. 25)

1.6.3.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1) 목욕장업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 제3호 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2) 찜질방과 일반목욕장

- ① 나목에 해당하는 찜질방은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 ② 가목에 해당하는 일반목욕장은 탕내 모든(증기탕 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면적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 즉, 300㎡이상일 경우에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3)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 목욕장업

- ① 하나의 층에 목욕장 형태의 구조와 찜질방형태의 구조가 함께 있는 경우
- ② 하나의 건축물에 일부 층에는 목욕장 형태의 구조가 다른 층에 찜질방 형태의 구조가 함께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운영하는 경우

- ③ 일부 층은 짐질방으로 사용하고 다른 일부 층은 내부통로 등으로 연결된 목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1.7.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7.1.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게임제공업 :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 ③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④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 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2)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 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②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 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③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④ 복합유통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휴게음식점 정의 참고

☞ 인·허가 담당부서 : 구청 문화체육과

1.7.2. 연 혁

(1)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2001. 5. 20)

① 게임제공업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PC방, 오락실 등)

※ 게임제공업 : 게임시설 또는 게임 기구를 갖추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이용자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게임시설 또는 게임 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 2(2003. 1. 17)

①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일명 PC방)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

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②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다중이용업의 범위(2004. 5. 30)

- 게임제공업(1층 제외),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1층 제외)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07. 3. 25)

-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건축법 시행령(용도) 개정관련 연혁(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① 2006.5.8. 이전 기준 면적 5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② 2006.5.8. 이후 기준 면적 15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 기존 건축물에 신규로 PC방(150㎡이상)을 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 기존(2006. 5. 8이전) PC방(150㎡이상)을 하던 곳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PC방(150㎡이상)할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③ 2008.5.15. 이후 기준 면적

⇒ 청소년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기준 면적 5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기준 면적 3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④ 2014.3.24. 이후 기준 면적 5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1.7.3. 다중이용업소 범위

(1)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한다.(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층수와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퀴즈게임을 노래반주 기기에 접목하여 제작된 노래반주게임기는 그 반주기기의 기능, 형태 및 구조 등에서 음산법상 등록대상인 노래연습장의 노래반주기와 매우 유사하고, 기기의 설정 조작시 퀴즈기능 제거가 가능하여 퀴즈기능이 제거된 반주기기는 기존의 노래연습장 반주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노래반주게임기의 기능 및 청소년게임제공업 코인노래연습장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노래반주게임기를 이용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은 음산법상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해석(2016.3.24.) -

1.8 노래연습장

1.8.1 관계법령 : 『음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 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인·허가 담당부서 : 구청 문화체육과

1.8.2. 연 혁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1.3.8)

-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을 하고 풍속영업법에 의거 경찰서장에게 통보토록 함

(2) 내무부 예방 13810-125호(1995.12.13)

- ① 노래연습장영업 신고 시 소방시설 완비증명 첨부제 시행
- ② 1995.11.22 자이안트 노래방 화재, 1995.12.4 진실노래방 화재

(3)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소방시설기준 고시(내무부고시 제1996-71호, '96.3.30)

- 개별법에서 허가·신고·등록 시 소방시설완비증명 첨부
- (4)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3(1997. 9. 27)
 - 노래연습장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발급제도 법제화
-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2004. 5. 30) - 노래연습장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07. 3. 25)
 - 노래연습장

1.8.3. 다중이용업소 범위 :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해당됨.

1.9. 산후조리원

1.9.1.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 산후조리업 :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인·허가 담당부서 : 구청 건강증진과

1.9.2. 연 혁

-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004. 5. 30)
 - ① 산후조리업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2007. 3. 25)
 - ① 산후조리업

※ 모자보건법 제2조 각호 조정으로 산후조리업은 10호로 이동함

1.9.3. 다중이용업소 범위 :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해당됨.

1.10. 고시원업

1.10.1. 관계법령 : 고시원업은 인·허가 부서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고 후 영업가능

- **고시원업** :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인·허가 담당부서 : 없 음

1.10.2. 연 혁

- (1) 소방법 시행령 제2조(2003. 1. 17) : 고시원업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다중
이용업의 범위(2004. 5. 30) : 고시원업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2007. 3. 25) : 고시원업
- (4) 「건축법 시행령」용도구분 명시 (2009. 7. 17)
 - ① 고시원 용도 면적 합계가 1,000㎡미만 고시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② 고시원용도 면적 합계가 1,000㎡이상 고시원 : 숙박시설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개정(2009. 7. 17)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
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
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다.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5) 「건축법 시행령」개정(2011.6.29.)

- ① 고시원용도 면적 합계가 500m²미만 고시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② 고시원용도 면적 합계가 500m²이상 고시원 : 숙박시설

※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로 명칭(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6)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호, 2015.12.4. 제정]

1.10.3. 다중이용업소 범위 : 고시원업은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1.11. 권총사격장 · 골프연습장업 · 안마시술소

1.11.1. 관계법령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별표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
- 『의료법』제82조 제4항

☞ 인·허가 담당부서 : 권총사격장(경찰서 생활안전과),
 골프연습장업(구청 문화체육과),
 안마시술소(구청 보건의료과)

1.11.2. 연 혁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10.8.11.)

※ 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① 기존 권총사격장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 3. 31. 까지 제9조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 ② 기존 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③ 기존 골프연습장업 및 기존 안마시술소 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2011. 3. 31. 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소방방재청장이 건축물의 구조상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천장과 벽을 합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10분의 9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경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1.11.3. 다중이용업소 범위

※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해당되며, 권총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도 포함됨.

1.12. 전화방·화상대화방업·수면방업

1.12.1. 관계법령 : 인·허가 부서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고 후 영업가능

☞ 인·허가 담당부서 : 없 음

1.12.2 연 혁

- (1) 소방법 시행령 제2조 (2003. 1. 17)
 - ①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004. 5. 30)
 - ①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2007. 3. 25)
 - ①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1.12.3 다중이용업소 범위

- (1)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전화기, 텔레비전, 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 안에 침대, 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은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해당됨.

1.13. 콜라텍업

1.13.1. 관계법령 :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 인·허가 담당부서 : 없 음(신종다중이용업소)

1.13.2 연 혁

- (1) 소방법 시행령 제2조(2003. 1. 17)
 - ① 콜라텍업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2004. 5. 30)
 - ① 콜라텍업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07. 3. 25)

① 콜라텍업

1.13.3. 다중이용업소 범위

- (1)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용도 : 위락시설)
- (2) 콜라텍업은 층수와 면적(크기)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됨

2. 안전시설등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

구 분		종 류
1.소방시설	소화설비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2.2. 업종별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업종별	종류
모든 다중이용업소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구, 누전차단기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밀폐구조의 영업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및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	가스누설경보기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피난유도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영상음향차단장치
고시원업	창문

2.3.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2.3.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공통)

(1)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1개 설치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준용

(2) 영업장에는 보행거리 20m이내 마다(소형) 1개 설치

(3)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인 곳에 비치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준용

- (4) 보일러실·주방에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바닥면적 10㎡이하 1개, 10㎡초과 2개), 주방의 경우 설치하는 수동식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시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및 별표 2(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문구가 없어 규칙 개정 시 반영 예정이며 기존 대상에 소급은 법령에 규정되지 않으면 화재안전기준을 준용하여 권장 할 것.

2.3.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 (1) 설치 대상 : 고시원, 산후조리원, 권총사격장, 지하층, 무창층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 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것(2002.1.1.)
 - 기존 다중이용업소(2005. 4. 29 이전)가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
 - ⇒ 완화지침의 규정에 의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된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신규업소에도 적정한 소방시설로 인정할 수 있음.(『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등에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참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이상인 영업장에 설치(2007. 3.25. 시행)

⇒ 2007. 3.25. 부터 공유면적 개념이 영업장 면적에 반영됨

-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9.07.08. 시행)
 - ※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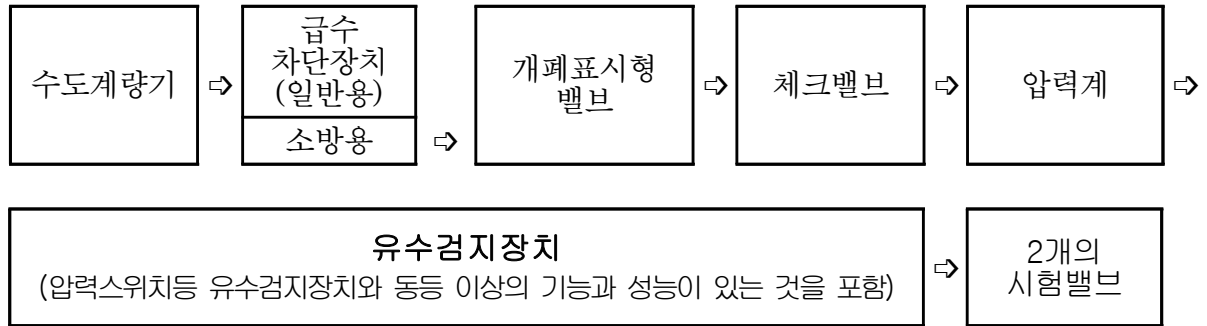
< 제외 대상 >

산후조리원 및 고시원 영업장이 지상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1.12. 시행)

- 권총사격장 및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2010.11.12. 시행)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의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또는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권총사격장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다.
-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의 다중이용업소(2014.1.7.개정, 2015.1.8.시행)

※ 적용례) 이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신고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에 적용

(2)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2011.11.24 시행)



○ 제어반(2013.6.10. 신설)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 시험 가능

- 급수차단장치는 화재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 급수를 차단할 것
-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수도배관 호칭 32mm이상의 배관으로 할 것
- 주배관은 32mm, 수평주행배관은 32mm, 가지배관은 25mm이상으로 할 것. 최장배관은 성능인정 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할 것.
-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방수압력(상수도 직결형, 케비닛형)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하는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Mpa(1kg) 이상**, 방수량 **50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제5조] ⇨ 현장상황에 맞춰 압력확인 (압력계 등 - 1kg이상)

(3)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2011.11.24 시행)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소방제도과-5450(2011.12.09.)호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지침 시달”

- 기존 캐비닛형 : 수원 300~600리터 [형식 : 상수도직결형 KFI 인정]
- 개정된 캐비닛형 : 수원 1,000~2,000리터 [형식 : 펌프가압형 성능인정]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제정일 (2012.11.1.) 이전까지 기존 KFI 인정제품을 사용하고 “기술기준” 제정 이후에는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제품을 사용할 것
- ※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으로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같이 기존 시설 인정(논란)

-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을 것(2013.6.10. 개정)
-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 주배관은 32mm, 수평주행배관은 32mm, 가지배관은 25mm이상으로 할 것. 최장배관은 성능 인정받은 길이로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할 것.
-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음

※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캐비닛형설비) 적용례

- 한 층(별개의 층 포함)에 다수의 영업장이 있을 경우 영업장별로 설치

(5) 간이헤드의 설치기준

◇ 간이헤드 설치 기준(2011.11.24. 이전)

- 간이헤드 하나의 방호면적 : 13.4㎡이하
- 간이헤드와 헤드사이 거리 : 3.7m이하
- 간이헤드는 벽이나 칸막이까지의 거리 : 0.3m에서 1.8m이내에 설치
- 간이헤드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
⇒ 2.5cm ~ 10.2cm 이내가 되도록 설치

-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mm에서 102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 상향식 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6) 송수구 설치 기준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6.10.)

(7)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여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과 관련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나 감리자 지정을 별도로 하지 않음

2.3.3. 경 보 설 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1) 2006. 12. 7. 전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능(연동여부 관계없음)

2) 2006. 12. 7. 이후에는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여야 함(사전지도에 의해 이후 설치된 경우 예외)

⇒ 법령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는 것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별개임

3)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1개 이상 설치 (2013.02.23. 시행)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 및 감지기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 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 연동 설치 특례 기준 삭제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시 수신반 별도 설치대상

구분 필요 [예방과-7440(2013.04.10) 다중특별법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업무처리방법]

○ 현 상태

⇒ 「다중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마다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업장마다 수신반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담당자별 해석이 상이하여 법 집행에 혼선 초래하고 있고, 일반음식점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영업장마다 수신반 설치 시 유지·관리가 곤란하므로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 업무처리 방법

⇒ 영업장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업소는

- ①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②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임

⇒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2015.1.8.시행)

4) 주요 설치 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설치 할 것

○ 고시원 거실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는 연감지기 설치(2015.1.23. 신설)

⇒ 산후조리원은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에 준할 것

⇒ 연기감지기, 지구경종, 시각경보기 등 수신기에 접속 가능한 회선 수 확인(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참조)

(2)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여부 : 별도로 하지 않음

(3)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것

2.3.4.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1)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간이 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한다)를 설치할 것

※ 5층 이상 영업장의 비상구는 별도의 계단을 설치할 것

2) 피난기구 설치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따라 설치할 것

(2) 피난유도선

- 1)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설치할 것

- 2) 피난유도선 설치대상 (2013.3.23. 시행)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의 영업장

3) 피난유도선 주요 설치기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설치할 것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선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2009.10.22. 신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1)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1개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2)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주요 설치 기준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및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라 설치할 것

- 11층 이상인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 장례식장·방송 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	○ 중형피난구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의 부분	○ 통로유도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파트	○ 소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마. 그 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 비교	
1.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 피난구 유도등 또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중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휴대용비상조명등

- 1)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라 설치할 것

2.3.5. 비상구

- (1)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층마다) 1개 이상 설치
- (2) 층별 비상구 확보 방법(계단이 1개소인 건축물의 경우)
 - ① 지하층 · 1층 : 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 설치
 - ② 2~4층 : 출입구 반대쪽에 부속실 또는 발코니 + 완강기(피난기구) 설치
※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은 비상구의 규격으로 설치
※ 추락방지 조치
 -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 ③ 5층 이상 : 별도 계단 설치
※ 옥상 대피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도 가능
- (3)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영업장의 긴 변 길이란 영업장 각각의 실제 변의 길이를 확인하여 그 중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함

※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 거리측정 방법 : 출입구 문 중심에서 비상구 문 중심까지의 **수평거리**(수평면상의 거리로서 두 점간의 실제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단 거리) **측정**[예방과-31170(2016.12.27.)호 참조]

(4) 비상구의 규격 : 가로 75cm이상, 세로 150cm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5) 비상구 구조

①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準不燃材料)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가능

②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능

(6) 문 열림 방향

① 비상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②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 가능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자동문 설치 기준 확대 적용례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영업장 내에 설치하여 활용 가능
- 방화구획 선상(피난계단 포함)은 방화문(자동폐쇄장치 설치)⇒자동문(현재 기준충족)⇒영업장, 비 방화구획 선상에는 유리문⇒자동문(현재 기준충족)⇒영업장 순서로 설치 가능함(자동폐쇄장치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함)

(7) 문의 재질

① 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휴즈블타입 안됨)

② 다음의 경우는 불연재료로 설치 가능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 제반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방화셔터(일체형 제외)로 설치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 3M 이내 설치)

(8)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 ①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 ② 비상구의 문은 (7)의 문의 재질 기준으로 설치할 것
- ③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④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 2013년 소방제도분야 정책설명회 후 업무처리 방법 알림 >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나목(복층구조 영업장)과 관련하여 각층마다 출입구와 비상구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복층구조 영업장의 기준에 따라 출입구는 각각의 층에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는 각층마다 설치하여야 함.

2.3.6.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2013.2.13. 시행)

(1) 설치 대상 : 구획된 실이 있는 다음의 업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의 영업장

(2)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 내부 피난통로의 폭 : 120cm 이상
-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 150cm 이상으로 설치
-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중전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2007.03.25 시행. 행정자치부령 제379호, 2007.03.23. 제정)

8. 영업장 복도·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복도·통로 폭 기준 : 복도·통로 폭은 최소 90cm 이상으로 할 것.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복도·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전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2009.05.15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83호, 2009.5.15. 일부개정)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내부 통로 폭 기준

-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cm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c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상기 대상(7개업종)외 기타 대상은 인명대피 등 활동을 위해 최소 75cm 이상 확보토록 권고

2.3.7. 창 문

(1) 설치 대상 : 고시원

(2) 설치 기준

-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크기로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
- 고시원에 창문을 설치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 연기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닫이 창문 등으로 설치 가능
- 유리는 일반유리로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

2.3.8. 영상음향차단장치

- (1) 정의 :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 (2) 설치대상 : 화상 재생장치, 음반 재생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 ※ [예방과-3172(2017.2.16.)호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관한 개선 지침 추가 시달” 참조]
- (3) 설치 기준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것(2013.02.23. 시행)
 - 화재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수동차단스위치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동차단스위치와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장치”라는 표지 부착할 것
 -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2.3.9.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댐퍼(damper)를 설치할 것

2.3.10.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1) 피난안내도 제외 대상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33m² 이하인 경우,
- 영업장내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컴퓨터가 설치된 책상
 - ※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인정

(3)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대상

- 영화상영관, 비디오소극장업 및 노래연습장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2015.1.7. 삭제)
- 영 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및 콜라텍업)

(4)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간(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 등을 작동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피난 및 대처방법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6)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2013. 02. 23. 시행, 기존영업장 2014. 02. 22. 시행)

- B4(257mm×364mm) 이상의 크기로 할 것
 - ※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mm×420mm) 이상의 크기 할 것
 - ※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3.02.23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2013.01.11. 일부개정)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34호, 2013.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015. 1. 8. 시행)

시설구분		적용구분
1. 소방시설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피난기구	•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피난기구 중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은 제외한다.)
	피난유도선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휴대용 비상조명등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비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기준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비상구 규격: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3) 비상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구분	적용구분
<p>2. 비상구</p>	<p>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p> <p>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p> <p>다)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p> <p>5)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p> <p>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p> <p>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p> <p>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p> <p>• 복층구조 영업장의 기준</p> <p>(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p> <p>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p> <p>2)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p> <p>3)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p> <p>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p> <p>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p> <p>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p>

시설구분	적용구분
2. 비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장의 위치가 4층(지하층은 제외) 이하인 경우의 기준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높이 100cm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cm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c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c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4. 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cm 이상, 세로 50cm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음향차단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3.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제1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창문의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 포함)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적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채광용 커튼류(블라인드)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 업무처리 지침(소방제도과-7007, 2015.12.28.) “완비증명서 발급시 다중이용
업소법 적용 철저”

① 구획된 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내 안전시설 등 적용 철저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로 구획(법 제10조의2)하고,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벨·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관련 법령 적용 철저

②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시 설치하는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봄

○ 출입문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의 일종으로 보아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로 설치

○ 다만, 합판이나 목재로 출입문 제작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

※ 부스형태의 코인노래방

※ 가구류와 반자돌림대 등에 대한 적용례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는 원칙적으로 방염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가구류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방염물품에 해당
- 반자돌림대 등은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 중간 몰딩과 걸레받이만 인정

※ 합판이나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할 경우 면적제한 적용례

-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 허용면적 산정시 층별로 면적 제한 적용

4.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6. 영업장의 내부구획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 노래연습장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 적용례 : 법 시행 후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등을 설치 신고하는 영업장부터 적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1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본조신설 2015.1.7.]

- ※ 영업장 내에서 구획된 실을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로 구획 시 내부구획 재료 적용례
 - 내부구획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처리
- ※ 북카페 또는 키즈카페의 경우 실을 구획하는 것은 아니나 일부 벽을 설치하여 중층 또는 토굴 형태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적용례
 - 구획된 실이 아니고 (준)불연재료로 설치
- ※ 영업장 내 내부구획 기준과 비상구 기준 중 다른 영업장과의 구획 적용례
 - 비상구 기준 중 영업장 상호 구획은 바닥에서 천정 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 적용
- ※ 부스형태의 코인 노래방 구획기준 적용례
 - 부스형태의 코인 노래연습장도 천정속까지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하며, 또한 기존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던 코인 노래방이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 완비증명서를 받을 경우도 포함

◆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시행령별표1의2 비고3.)

- ※ 안전시설 등을 적용하는 기준인 구획된 실(室) 적용례
 - “이용객 등이”란 이용객과 관계자를 포함하며 실(室)은 방을 세는 단위이고 방이란 출입문이 있어야 됨
- ※ 소규모 창고, 옷장용도 및 화장실 안전시설 등 적용례
 -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구획된 실이 아니며,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7. 다중이용업소별 업무 담당부서

연번	다 중 이 용 업	담 당 부 서
1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구청 보건위생과
2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구청 보건위생과
3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구청 문화체육과
4	학원, 독서실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5	목욕장업	구청 보건위생과
6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구청 문화체육과
7	노래연습장	구청 문화체육과
8	산후조리원	구청 건강증진과
9	골프연습장업	구청 문화체육과
10	안마시술소	구청 보건 의료과
11	권총사격장	경찰서 생활안전과
12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담당부서 없음

8.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사진)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간이스프링 클러 설비	비상벨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비상구
 <p>감지부 수신제어부</p>	

9.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신고 등 관련 서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27.>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② 영업의 종류		③ 영업장 면적 구획된 실의 수	
	④ 영업장이 있는 층 층 중 층		⑤ 신고구분 [] 신규 [] 변경	
	⑥ 안전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공사업자	⑦ 상호(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제 호	전화번호	
불연화 및 통로·창문	⑧ 사용재료		설치면적	
	⑨ 영업장 내부통로 cm		⑩ 창문크기 가로 cm × 세로 cm	
⑪ 위치도 (약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 등의 설치(완공)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명세서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 계단 등 해당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를 말합니다.) 1부. 완공신고의 경우에는 설치내용이 설치신고 시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라 받은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업, 콜라텍업만 해당합니다) <p>* 설치신고 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만 첨부합니다.</p>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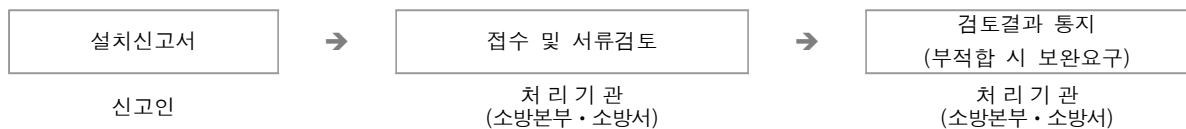
1. 안전시설등 설치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 설치계획의 적합여부를 미리 확인 받으시고,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안내받은 일시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한 후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완료된 후 안전시설등 완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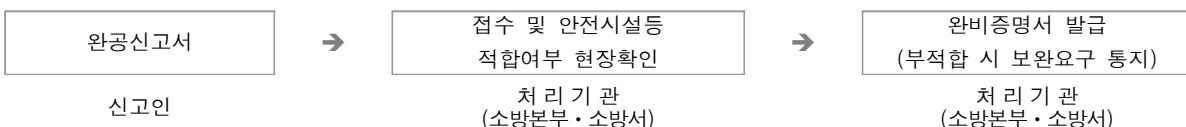
- ①란에는 영업주(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②란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영업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③란에는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영업장 내에 설치된 주방, 화장실, 창고, 계단, 기타 서비스공간을 포함합니다)의 바닥면적 합계 및 구획된 실의 수를 적으십시오.
- ④란에는 전체 건물의 층수와 ②란의 용도로 사용하는 영업장이 있는 층을 적으십시오. 영업장으로 여러 층을 사용할 때에는 층표(,)로 구분하여 해당층을 적으십시오.
- ⑤란은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에,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의 일부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 표시를 하십시오.
- ⑥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목 별로 적으십시오.
- ⑦란에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의 상호(명칭)을 적으십시오.
- ⑧란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사용재료와 설치면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합판·목재 등으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⑨란에는 내부통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영업장에 설치하는 내부통로의 폭을 적으십시오.
- ⑩란에는 영업장 창문 적용대상은 영업장에 설치하는 창문의 크기를 적으십시오.
- ⑪란에는 영업장의 위치도 또는 약도를 그려주십시오(별도로 첨부해도 됩니다).

처리절차

1. 설치신고 처리절차



2. 완공신고 처리절차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① 건축구조	식 조 층 연면적:						m ²	
② 안전시설등 설치내용								
시설 구분	설비명	설치 수량	비고	시설 구분	설비명	설치 수량	비고	
③ 영업장의 평면도(복도·계단 등 부수시설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제 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확인한 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직인

※ 알 림

이 증명서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업 소 명	소 재 지					
사 업 자				업 종		
규 모	구조	지상	층/지하	층	연면적 m ²	바닥면적 m ²
	영업장 설치층: 층		사용면적: m ²		구획된 실(룸)의 수 : 개	

안 전 시 설 등 의 설 치 내 용

시 설 구 분	설 비 명	기 준 수 량	설 치 수 량	적 합 여 부
소 화 설 비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 보 설 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 난 설 비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비 상 구	방화문			
	비상구			
영업장 내부통로와 창문	내부통로 폭			cm
	창문크기	설치개수 개	창문크기 가로 cm × 세로 cm	
그 밖의 시설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피난안내도			
	피난안내 영상물			
실내장식물불연화	사용재료:		설치면적:	
내부구획불연화	사용재료:			
방 염	방염대상물품 사용 여부		물품명: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영업주 성명(변경 전/변경 후)	전화번호	
	영업장 상호(변경 전/변경 후)	영업장 소재지	
	완비증명서 발급번호	완비증명서 발급일	
재발급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잃어버린 경우 <input type="checkbox"/>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상호가 바뀐 경우 <input type="checkbox"/> 영업주가 바뀐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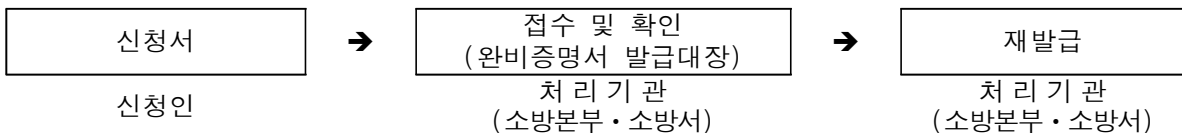
첨부서류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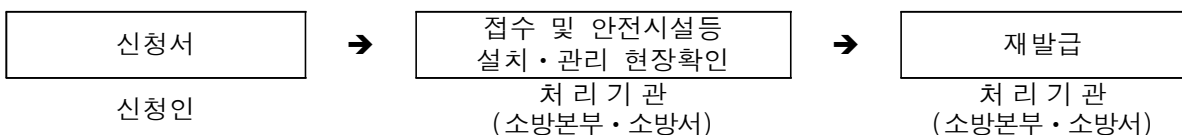
1. 영업주 또는 상호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완비증명서 발급번호·발급일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완비증명을 발급받은 후 안전시설등·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실 수 없으며,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4. 기존 고시원업·산후조리업은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치(완공)신고를 하시고, 신규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이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 신규로 발급 받으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1.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2. 상호 또는 영업주가 바뀐 경우



제4장 완비증명 관련 지침 등

1. 집단급식소 완비증명 발급관련 업무처리지침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집단급식소 관련) 내용

- 제58조제1항(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설치·운영신고서에 교육필증, 수질검사성적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검사필증, 소방서장이 발행한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대상에 한함)
- 제58조의3(집단급식소 시설기준)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5의 3과 같다.
 - ※ 별표 15의 3 제5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소방·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신 설)

(2) 집단급식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관련 업무처리 지침

-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상 집단급식소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 ②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소방서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지 말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처리 할 것
 - ③ 발급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되, 구비서류 중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는 반드시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 집단급식소가 완비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와 동일하게 제반 소방시설등을 적용하여야 함.
-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635(2005.10.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추가)』

2.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지침(2008.12. 1. 시행)

<예방과-17362(2008.11.28.)호 “고시원 피난통로 개선을 위한 비상구 확보 지침 시달”>

(1) 관련근거

- 행정2부시장 전화 지시사항(2008.10.24)
“고시원 유사시 대피로 확보 방안 강구에 최우선”
- 고시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자 회의 개최(2008.11.21)
“고시원 내부 통로(유효)폭 확대 등 소방안전성 확보 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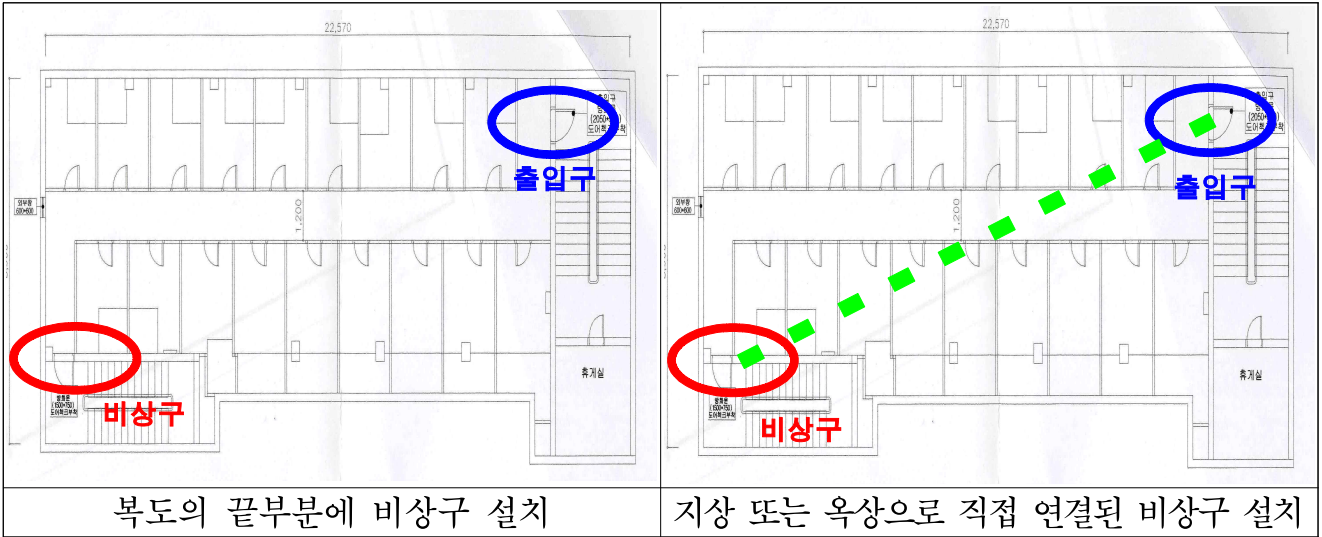
(2) 추진방향

- 내부 구조가 복잡한 미로 형태의 구조인 경우 피난 동선의 단순화
- 현장상황에 맞는 부속실 또는 발코니 설치로 비상구 1개소 이상 추가 확보
- 일정규모이상의 복도,통로폭 확보 및 피난유도선 설치권장을 통한 안전성 향상

(3) 추진계획

- **신규 대상 : 비상구 확보 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 ☞ 시행일 : 2008. 12. 1일 (민원 접수일 기준)
 - ※ 단순 명의 변경 등을 위한 재교부 신청의 경우 제외
 - ※ 보도매체 활용 및 고시원협회 등을 활용 홍보 강화
- **기존 대상 : 적극권장**
 - ☞ 고시원관계자 간담회 : 12월 중(소방서별 실시)
 - 인명피해 사례 및 비상구 설치로 안전성 등을 설명 후, 적극적으로 개선 유도
 - ☞ 비상구 미개선 대상 : 소방검사 및 소방안전교육 시 지속 유도
- **유형별 비상구 확보 방법**
 - ☞ 복도가 1개소인 경우 ⇒ **현행 법령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설치 예시》



☞ 복도가 2개소인 경우 ⇒ 복도의 끝부분 비상구 1개소 추가확보

《설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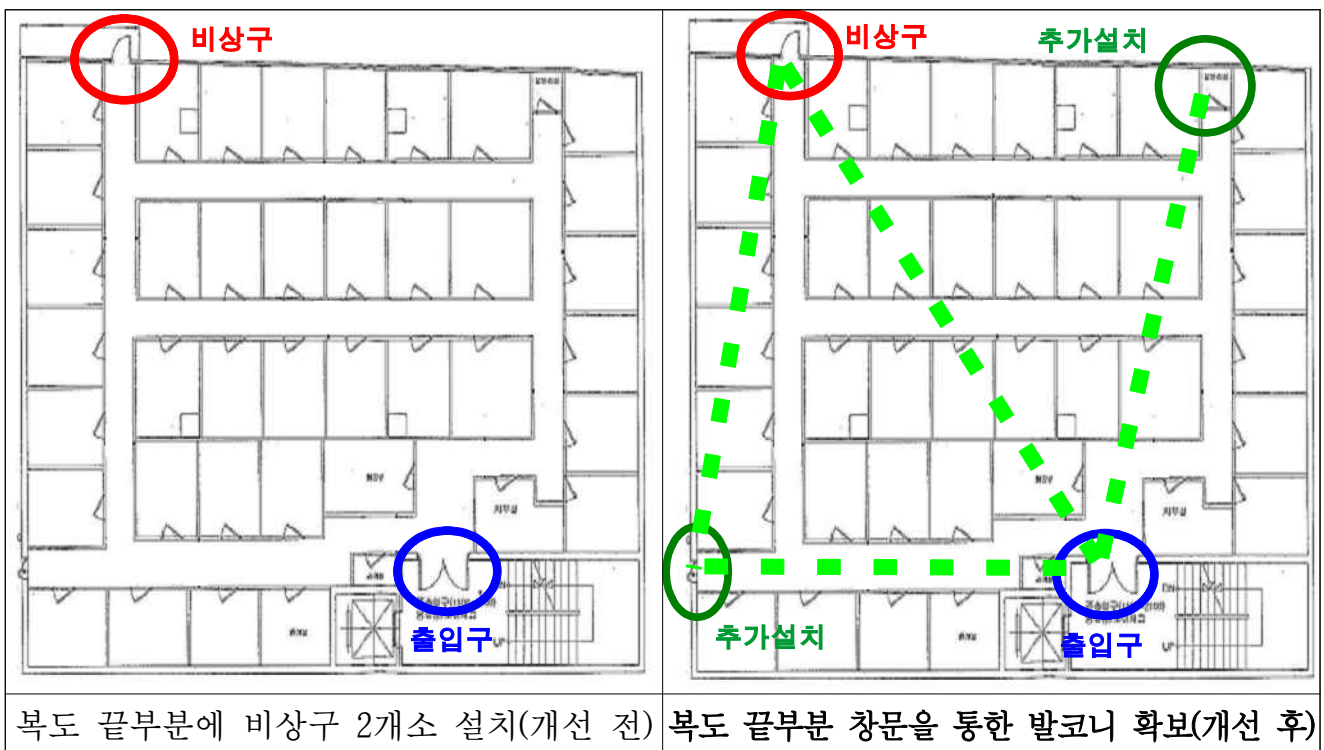
☞ 복도가 3개소 이상인 경우 ⇒ 복도의 끝부분마다 비상구 추가 확보

《설치 예시》



☞ 복도가 미로형인 경우 ⇒ 피난동선을 따라 비상구 추가 설치

《설치 예시》



☞ 비상구 설치 방법

- 창문 등 외기와 면하는 부분인 경우의 비상구 ⇒ **발코니 설치**



창문 등 외기와 면하는 부분에 발코니 설치



부속실 설치 곤란한 경우 발코니 비상구설치

- 복도 끝부분에 구획된 실이 설치되어 발코니 설치가 곤란한 경우
⇒ **부속실로 전환하여 피난통로 확보**



통로의 끝부분에 부속실 설치



부속실내 완강기 및 비상구 설치

3.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PC방 용도변경(2006. 5. 8)

(1) 부칙

- ①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건축물 중 다음 표의 왼쪽 란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동표의 오른쪽 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대상 건축물	개정된 용도
제2종 <u>근린생활시설</u>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u>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u> 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u>판매시설</u>

※ 주관부서 :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 (☎ 2110-8550)**

⇒ 기존 건축물에 신규로 PC방(150㎡이상)을 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 기존(2006. 5. 8이전) PC방(150㎡이상)을 하던 곳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PC방(150㎡이상)할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한다.

4. 독서실 수용인원 산정관련 업무처리 지침

- (1) 용도적용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다중이용업소의 범위에서 제3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학원으로 용도를 적용하되,
- (2) 수용인원 산정기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2호의 “다”목에 따라 산정하며,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됨
 - ☞ 예방과-3225(2005.03.07.)호 『독서실 수용인원 산정관련 업무처리지침 이첩시달』 참조

5. 비상구 부속실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장치

(1) 『추락위험주의』 경고 스티커 부착

- 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부속실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구조일 경우 추가로 안전장치나 추락위험주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 허공 비상구가 될 수 있음

➔ 부속실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나 경고 스티커(주의 추락위험)를 부착하여 허공 비상구가 되지 않도록 조치

※ 본부 예방과-1457(2005.11.30.)호 "추락위험 지상비상구 개선대책 시달"

[스티커 활용 예시]



6. 완비증명 사전지도 요청대상 출장지도

(1) 방 법 : 사전지도 관리대장에 신청접수

- ① 접수일시, 대상개요, 접수자, 처리결과 등

☞ 예방13810-1253(1998.8.28)호『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 개선과제 검토결과 시달』참조

(2) 절 차

- ① 민원인 사전지도 신청(전화, FAX 등 이용) →
- ② 사전지도 관리대장에 신청접수 →
- ③ 현장 출장지도 : 민원상담·접수단계에서 정확한 사전상담·안내

7. PC방 금연구역설정관련 소방시설등 보완방법

(1) 소방시설 보완

- 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사이 문 양쪽 상단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 ②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안 구획된 실에 추가하여야 할 소방시설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설치
 -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 비상경보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는 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연동)중 하나 설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개임

(2) 비상구 확보

- ①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함
 - ☞ PC방의 중간을 구획하여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할 경우 중간에 설치하는 문은 양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
- ②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1항 1호 가목에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주의사항 : 비상구 앞의 소규모의 실을 설치하여 경유거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

8.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2006 & 2)

-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의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 5. 29. 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계단)
- ②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 ③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 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 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④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9. 산후조리원 관계법령

(1) 모자보건법[개정 2005. 12. 7]

① 제2조(정의)

- 12호 : "산후조리업(산후조리업)"이라 함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신설)

②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 12. 7]

③ 부 칙<제7703호, 2005. 12. 7>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2·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06. 6. 8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①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4. 종사자의 자격증(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의 면허증을 말한다) 사본

5. 제17조제4항에 따른 교육 수수료증(법 제15조의6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같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기존다중이용업소 등 소급적용관련 완비처리 지침

<예방과-4457(2007.03.20)호 "기존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완비처리 세부지침 시달">

기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소급적용관련 완비증명발급과 관련 완비 증명 발급절차 등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2007년 5월 30일 까지 기존 다중이용업소 완비처리를 원활하게 마무리 하고자 함

(1) 추진경과

- ① 90년대 초반 노래방이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그 후 노래방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1995. 12. 13. 부터 노래연습장 영업신고시 소방시설완비증명을 첨부케 하였으며,
- ② 1997. 3. 7. 소방법 제8조의2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발급 제도가 법제화가 되고 다중이용업소 범위가 단란주점·유흥주점, 음식점 등으로 확대됨
- ③ 2004. 5. 29. 에는 소방법이 폐지되고 4개분법화 되면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

시설등의 경과조치에 의해 2년 이내에(2006.5.29)까지 소방시설등을 현행법에 맞게 소급하여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 ④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2년 이내에(2006.5.29)까지 방염대상물 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하였으나,
- ⑤ 2006. 5. 29. 이르러 경과조치 관련 추진사항이 부진하자 법을 개정하여 1년을 더 연장하게 되었으므로 2007. 5. 30. 까지 경과조치 사항이 완료되어야 함.

(2) 소급적용관련 완비처리 지침

① 기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처리절차

- 신청접수는 기존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시설 등을 현행법에 맞게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에 완비증명발급을 요청(전화, 방문, 팩스, 문서 등)한 경우 ⇒ 『기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 접수대장』 일반접수
- 소방시설 등 설치신고서를 소방서에 접수하지 않아도 됨

② 현장확인 계획수립

- 『기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 접수대장』에 접수된 대상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현장 확인하여 완비 증명서 발급 처리. 다만, 업무량을 고려하여 서별 실정에 맞게 업무처리기간 조정이 가능.

③ 현장확인 복명서 첨부서식

- 완비증명발급을 위한 현장확인은 “시정청렴도 소방취약분야 보완대책 시달(2007.03.14)”에 의거 실시

※ 2002. 3. 30. 이전의 다중이용업소는 불연화평면도 생략 가능

11. 현장확인 복수복명 처리 개선

- (1) 본부 예방팀을 통하여 기 시달된 지침 및 지시된 복수복명(간부복수복명 포함)지침은 폐지하고,
- (2) 현장확인시 “시정청렴도 소방취약분야 보완대책 시달(2007.03.14)”에 의거 실시

12. 기존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대상 별도관리

- (1)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대장을 기존, 신규, 재교부(재발급)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고,
- (2) 2004. 5. 29. 이전의 다중이용업소가 완비증명을 발급받지 않아 현장확인 후 완비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연혁구분에 의한 기존/신규 구분에 관계없이 기존다중이용업소로 분류하여 완비증명서를 발급할 것
 (해설)만약 신규로 분류되어 소급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추후 소방검사시 담당자 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완화지침대상을 명확히 표기하여 소방검사 등 민원업무 처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기존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 신청 접수대장(서식)

연번	업소명	소재지	사업자	업종	규모			연락처 (전화번호)	접수일자 (년.월.일)	접수 담당자 (서명)	비고
					설치층 (층)	바닥면적 (㎡)	사용면적 (㎡)				

13. 다중이용업소 이중덧문 설치 관련 개선지침

<예방과-18189(2007.12.18)호 “다중이용업소 이중덧문 설치 관련 개선지침 시달”>

- (1) 다중이용업소 출입문·비상구문의 방화문 설치에 있어 건축법상 방화구획과 관계가 없는 장소의 방화문의 재질은 유리문(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 가능

(2)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은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할 경우 자동 문으로 설치 가능

- 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 ②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③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 위 3가지 사항 충족시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문으로 인정

※ 비상구문은 제외

14. 완비증명서 발급 「선처리 후결재 시스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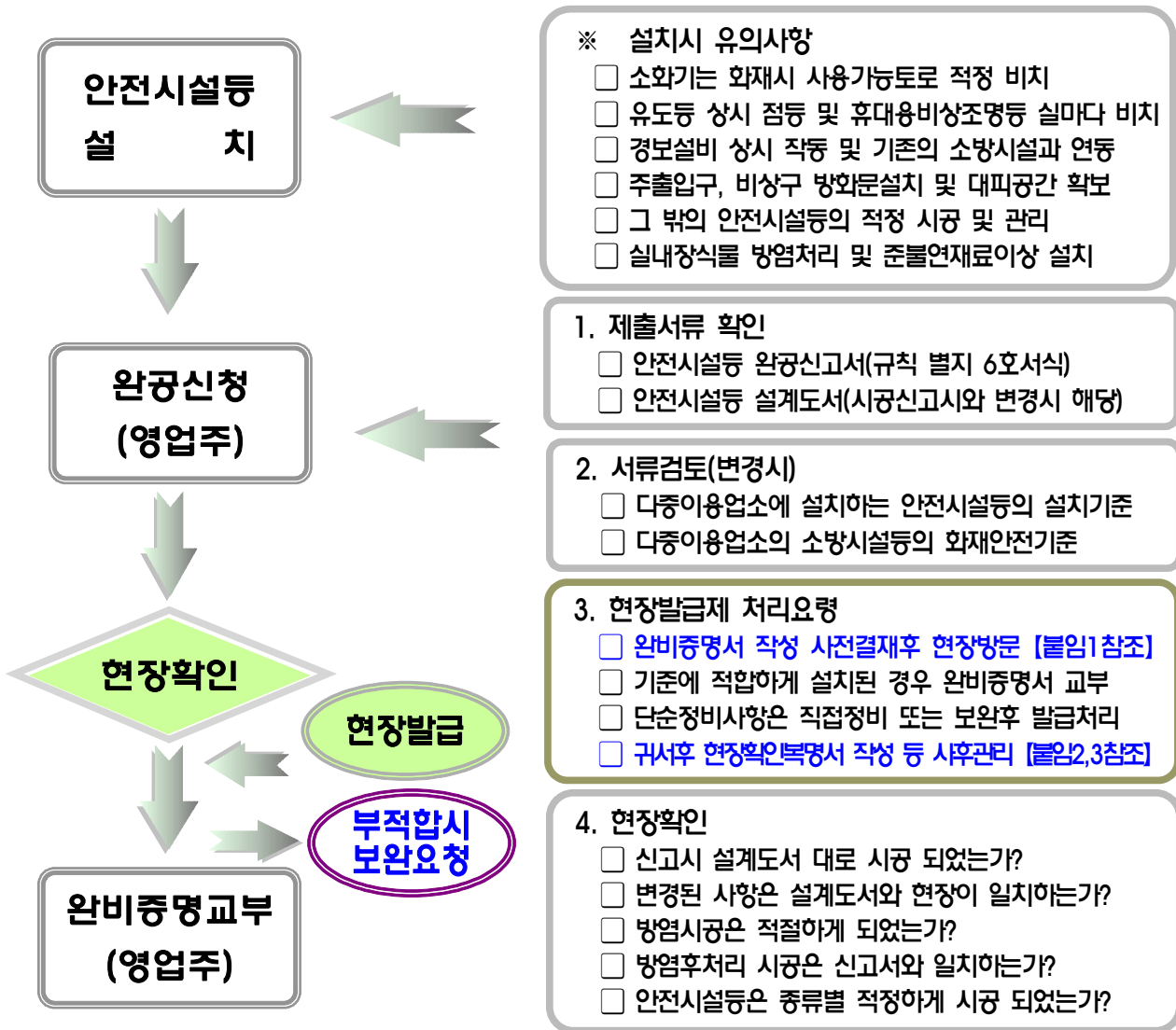
< 예방과-6639(2009.04.10.)호 “선처리 후결재 시스템 개선방안 시달” >

(1) 사전지도 및 전화상담

- 설치신고 대상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시 전화상담을 통한 적합성 확보
- 공사중이라도 관계인의 사전지도 요청시 상시 현장방문 지도
- 전화상담 및 사전지도 제도를 적극 활용, 현장확인시 부적합사항으로 인한 미발급 최소화
- 보완사항 발생시 미발급 사유를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개선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현장확인 및 현장 발급

- 현장발급 예정임을 결재를 득하고 완비증명서 발급지참
- 발급 안내문서는 민원인이 신청시 발급하고 민원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자체 보관



○ 완비증명 발급후 현장확인 복명서 작성

⇒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 확인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현장확인 복명서 작성(구조변경이 우려되는 경우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 보완사항은 현장확인결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사진 첨부 등)

☞ 완비증명서는 현장확인결과 보고서에 첨부하고, 반려대장에 기록관리

⇒ 관계인에게 미발급사유 및 보완사항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보완요청

○ 보완요청 대상 사후관리 철저

⇒ 미발급 대상은 사장 또는 과장이 직접 전화 등을 활용하여 관계인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절차 등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1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 기준 시달

< 예방과-8284(2009.05.07.)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 기준 시달 >

(1) 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0호(2009.05.01.)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 개선
방안”

(2)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3) 처리기준(개선방안)

【 신규 대상 】

- ◆ 다중이용업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 영업장 내부 실내장식물을 변경하여 방염처리대상 물품이 설치된 경우
- ◆ 영업장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내부구조변경(영업장의 구획된 실이 증가하거나, 내부의 통로 등이 변경되는 경우)이 있는 경우

【 재교부 대상 】

- ◆ 다중이용업소의 소유권(상호) 변경 및 단순 업종변경

예시 1) 매매 등에 의한 영업주가 변경되거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예시 2)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에서 게임제공업 등 화재 위험도가 비슷한 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관계 법령에 영업장 내부구조 등의 설치규정이 마련되어, 현재의 구조로는 업종변경에 따른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

예시 3) 최근에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전 영업주가 폐업 신고하였으나, 양수인이 동일한 업종으로 내부구조나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재신청 한 경우

※ 장기간 휴 · 폐업 등으로 실내장식물, 안전시설 등의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 동일한 구조로 영업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재설치하는 경우

예시 1) 동일한 구조로 영업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경우

예시 2) 화재로 인하여 영업장 내부가 전소하여, 기존의 설계도서에 의하여 동일한 구조 및 시설(실내장식물)로 영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 방염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영업장 구획된 실의 변경이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예시 1) 영업장내의 구획된 실을 합치거나 일부 크기를 줄이는 경우

예시 2) 실내 장식물의 변경, 비상구 위치변경, 발코니 크기변경, 부속 실을 발코니로 변경, 발코니를 부속실로 변경하는 경우 등

예시 3) 2개층의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을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1개층의 영업장을 폐쇄하고 1개 층만을 사용하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의 축소로 방염물품의 증가, 영상음향차단장치나 수신반 등 안전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상으로 분류

※ 참고사항

- 소방제도과-6192(2012.12.17.) “폐업에 따른 기 설치된 안전시설 등 인정 여부”

☞ **질의내용** : 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지?
-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지?

☞ **답 변** : 다중이용업소를 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16. 「건축법 개정관련 고시원 완비증명서」 발급 방법 알림

< 소방제도과-3282(2009.07.17.)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완비증명서 발급업무 철저 지시” >

- (1)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 2009. 07. 16.
- (2) 개정내용 : 고시원과 공동주택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 못함,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용도 분류

(3)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건축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2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 기 대상은 해당되지 않으며 2009.7.16. 이후 설치 대상부터 적용함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고시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고시원으로서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시원(1,000㎡ 이상인 고시원)

(5) 구획된 고시원실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

- 샤워시설, 화장실, 세면기

※ 취사기구는 설치 불가능함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처리 절차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허가)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 현장확인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7) 용도변경(신고 또는 허가)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9개의 군으로 나누어 위험도가 높은 군(위)에서 낮은 군(아래)로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이며, 위험도가 낮은 군(아래)에서 높은 군(위)으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 사항임(예,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산업 등 시설 군으로 용도변경은 신고 사항이며 반대의 경우는 허가사항임)

17.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관한 개선 지침

〈 소방제도과-736(2012.02.10.)호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대상에 관한 개선 지침” 〉

(1) 제도연혁

○(도입) '98.5.12.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43조의4제1호

- 설치대상 :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에서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경과) '04.6.4. 제정 「다중이용업소의소방시설등의화재안전기준」

- 정의 신설 :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 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차단하는 스위치

○(현재) '07.3.23 제정 「다중이용업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 설치대상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 소방제도팀-1157(2007.3.6.)호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소급 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 제3조

⇒ 전체 다중이용업종을 영상음향차단장치 적용가능 대상으로 포함

(2) 문제점

○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영업장 또는 업종에만 영상음향차단장치 적용은 「시행규칙」의 영상음향차단장치 정의 및 설치 대상과 부조화

○ 법령의 규정 내용과 조화되지 않는 적용실태 개선 필요

⇒ 영상음향장치는 “영상모니터에 화상 및 음반재생장치가 되어 있어 영화,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거나 화상(畫像)장치나 음반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며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대상은 특정 다중이용업종에 한정되지 않고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구획된 실이 아닌 곳 포함)임

(3) 적용지침

○ 적용방향

- 노래반주기 사용 영업장에 대하여는 적용 유지
- 노래반주기 이외의 영상음향장치 사용 영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 구획된 실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더라도 적용 가능

○ 노래반주기 이외의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적용 지침

- 영상장치 또는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영화,음악감상 할 수 있는 영업장 (비디오물감상실업, 영화상영관, PC방)은 당연 적용

※ PC방은 1대의 기기가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콘텐츠를 제공 가능

영상음향차단장치 당연 적용대상(6개 업종)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PC방, 노래연습장

- 그 밖에 구획된 실에 영상음향장치 설치 영업장(전화방,화상대화방 등)은 소방관서장이 이용자 특성(음주)과 피난여건을 판단하여 화재 인지,대피 지연 및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선택적 적용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적용시기

- 안전시설등 설치·구조변경 신고대상에 적용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기준 적용시 주의사항

- 실내 조명이 동시에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18. PC방 등 전면 금연실시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 예방과-9109(2013.5.6.)호 "pc방 등 전면 금연실시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시달" >

□ 검토배경

-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영업장 전체 금연 실시('13. 6. 8)
- 흡연실 설치 시「다중특별법」에 따른 조치 사항 등 질의(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 **금연실시 대상(다중이용업소)** _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3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 **흡연실 설치기준** _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

- (설치위치) 가급적 실외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 (표지부착) 영업장 전체 금연구역이라는 표지와 흡연실 표지판 부착
- (설치방법)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자 수를 고려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설치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재떨이 등 흡연관련 시설외에 기타 시설 설치불가
- (제외장소)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피난 통로상 설치 불가)

□ **흡연실 설치 관련 업무처리 방법**

(1) **영업장내에 이동 가능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경우**

- 흡연부스(재떨이 등 흡연관련 시설 포함)는 불연재료로 설치, 소화기 비치 권장



- (설치위치) 피난 상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피난 통로상에는 설치 불가)
- ※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 부스 형태로 설치한 것도 포함)

(2) **영업장내에 흡연실을 별도 구획하는 경우**

○ 영업장내에 흡연실을 별도 구획하는 경우라 함은 기존 영업장 면적 및 안전시설등 변경 없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실만**을 설치하여 **'구획된 실'**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 (설치신고)「다중특별법」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부구조 변경에 해당되므로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를 하여야 함

○ (설치기준) 구획된 실에 **영업허가 당시의 안전시설등 기준**에 따라 비상벨설비 등 안전시설등 설치

○ (첨부서류) 변경된 평면도 및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 (변경된 평면도) 기 제출된 평면도에 구획된 실 및 안전시설등 수기 작성 가능
- (안전시설등 설치명세서) 기존 설치명세서에 추가 시설 기재 가능

※ 안전시설등 설치 신고 없이 구획된 실에 안전시설등을 미설치한 경우
→ 과태료 및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 **행정사항** :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부칙<제24257호, 2012.12.27>제2조에 따라 **현행법**을 적용하여야 하나,「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영업장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허가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업무처리.

19. 「구획된 실의 개념과 구획된 실의 출입문 재질 내용」 업무처리 지침

< 예방과-30852(2015.12.28.)호 "완비증명서 발급시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철저 알림">

(1) 구획된 실이 있는 다중이용업소내 안전시설 등 적용 철저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로 구획(법 제10조의2)하고,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벨·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관련 법령 적용 철저

(2) 다중이용업소 내부구획시 설치하는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봄
○ 출입문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의 일종으로 보아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로 설치

- 다만, 합판이나 목재로 출입문 제작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

19.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예방과-17878(2015.07.23.)호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관련 처리방법 개선 알람">

-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고 하는 자(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신고대리인(공사업자 등)에게 발급하고자 할 경우는 대리인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 사실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한 후 발급

20. 감성주점 완비증명서 발급처리 지침

<예방과-4374(2016.02.18.)호 "감성주점 완비증명서 발급처리 지침 알람">

- ◆ 춤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 등 완비증명서 신청시
⇒ 유흥·단란주점 기준으로 발급
 - ◆ 완비증명서 업종란에 "일반음식점(춤 허용업소) 또는 휴게음식점(춤 허용업소)"으로 기재
 - ◆ 시·군·구 조례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
⇒ 허가관청 통보
- ※ 소방관련법령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21. 비상구 설치 위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예방과-31170(2016.12.27.)호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 위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 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2]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할 것

◆ 현 실태 및 문제점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거리 측정 기준이 "직선거리" 또는 "보행거리" 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 업무처리 개선방안

○ 비상구 거리측정 시 「수평거리」적용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대한 거리측정 기준은 "수평거리"를 적용

※ 수평거리 : 수평면상의 거리로서 두 점간의 실제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단 거리